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 정 : 2012. 06. 26.

최근개정 : 2020. 12.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목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생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아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상담과 심리검사, 이와 관련되는 교육과 연구, 상담지도를 목적으로 한다.[2017.06.28.개정]

제3조(업무)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16.>

1.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련된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개정 2020.12.16.>
2.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및 예방 교육[2017.06.28.개정, 2020.12.16.]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의 분석
4. 학생 생활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5. 학생 자살·중독 예방 교육[2017.06.28.신설, 개정 2020.12.16.]
6. 학생들의 자아 성장, 심리개발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2017.06.28.신설, 개정 2020.12.16.]
7. 교직원 상담 역량 및 학생지도 관련 교육[2017.06.28.신설, 개정 2020.12.16.]
8. 기타 센터 운영에 관련된 활동<개정 2020.12.16.>

제 2 장 조 직

제4조(센터장) 삭제<2020.12.16.>

제5조(조직) ① 센터장은 학생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6.>

② 심리상담전담교원은 학생심리·성고충 상담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12.16.>

③ 진로상담전담교원은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12.16.>

④ 본 센터에는 전문상담소와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를 두고, 전문상담소는 심리상담부와 진로상담부로 나누며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16.>

1. 전문상담소<신설 2020.12.16.>

가. 심리상담부<신설 2020.12.16.>

- (1) 학생들의 개인 및 집단 상담
- (2)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 (3) 학생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4) 학내 자살·중독예방교육
- (5) 학생 자아성장 지원
- (6) 교수 상담 역량 강화 및 학생지도 관련 교육

나. 진로상담부<신설 2020.12.16.>

- (1) 학생들의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 (2) 진로 적성 검사 실시 및 해석
- (3)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진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신설 2020.12.16.>

⑤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신설 2020.12.16.>

⑥ 상담전담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상담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2.16.>

⑦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소의 업무는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2.16.>

제6조(임기) 삭제<2020.12.16.>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7.06.28.개정 2020.12.16.]

1.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과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센터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문에 응한다.
2. 운영위원은 센터장, 학생처장, 교목실장, 학생복지과장, 학사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학생 상담과 지도에 전문능력을 갖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2017.06.28.개정]
3.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0.12.16.>

1. 사전조사·분석 결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성과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2020.12.16.>

제8조의2(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개발·운영 및 개선) ① 학생상담센터는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매학기 1회 이상 사전조사·분석 및 결과가 반영된 보고서를 작성한다.<신설 2020.12.16.>

② 대학교육혁신단 열린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전조사·분석 결과를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및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12.16.>

③ 학생상담센터는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 점검,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매학기 1회 이상 환류보고서를 작성한다.<신설 2020.12.16.>

④ 사전조사·분석 결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성과 분석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여 대학교육혁신단에 보고한다.<신설 2020.12.16.>

[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3(취창업지원단과의 연계) 진로상담 등 학생상담과 취창업지원단과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취창업지원단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생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개선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제9조(전문상담) 본 센터는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객원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2017.06.28.개정]

제 3 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 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2017.06.28.개정]

제11조(예·결산 및 사업보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13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보호의 권리) 센터 이용 학생은 모든 사생활과 비밀

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2017.06.28.신설]

제14조(시행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2017.06.28.신설].

제15조(관련규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2017.06.28.신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6호,2020.12.1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